

「도령군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도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검 보 고

I. 제안자 : 한열찬 의원의 5인

II. 제안사유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하고 여비적용 규정의 변경 하기위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III. 주요내용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안 제13조)
- 검사위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고령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안 제13조)

고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신고 및 변경이 있을시 변경신고 의무 신설(안 제5조)

IV. 검토의견

고령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검사위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고령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재 도내 23개 시군중 13개시군에서 10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에 관한 사무의 조례개정 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고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이 2009. 4. 1 개정되어 의원의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변경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상 그 시행일을 2009. 10. 2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규(발췌)

□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4.1>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시행일 : 2009.10.2] 제35조제3항, 제35조제6항

[참고자료]

'09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현황

시 군 별	결산검사위원수당		비 고 (원)
	지급여부	금 액	
계			
포항시	여	70,000	
경주시	여	100,000	
김천시	여	100,000	
안동시	여	100,000	
구미시	여	100,000	
영주시	여	100,000	
영천시	여	100,000	
상주시	여	100,000	
문경시	여	100,000	
경산시	여	100,000	
군위군	여	100,000	
의성군	여	100,000	
청송군	여	70,000	
영양군	여	100,000	
영덕군	여	70,000	
청도군	여	100,000	
고령군	여	70,000	
칠곡군	여	70,000	
예천군	여	70,000	
성주군	여	80,000	
봉화군	여	70,000	
울진군	여	70,000	
울릉군	여	70,000	

※ 10만원 : 13시군 , 8만원: 1시군, 7만원 : 9시군